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업체들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98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에 대하여 취소 사유에 따른 재등록 제한기간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면서 동 기간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과태료 최저금액이 다소 높아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및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한 경우에 개별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과태료를 일부 감액하고, 이와 동시에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에 의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맹점 재등록 제한 기간(안 제3조 신설)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의 등록 취소 사유별 재등록 제한 기간
구체화

나. 규제외 재검토 기간(안 제8조 신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가맹점 재등록 제한 기간에 대하여 매 3년의
재검토 기간 설정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제1호다목 개정 및 라목 신설, 제2 호나목 및 다목 개정)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및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
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를 각각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감액하고,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에 의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며, 제3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가맹점 재등록 제한 기간)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2.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3. 법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 나. 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

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경우 :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다.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라. 법 제1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마. 법 제10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법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② 등록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등록 제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등록 제한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가맹점 재등록 제한 기간에 대하여 2022년 4월 20일을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1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나.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2호	6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3호	6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라.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4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마. 법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가맹점 재등록 제한 기간)</u>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u> :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2.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u>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u> :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3. 법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u>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u> :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나. 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u>물품의 판매 또</u>

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
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
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
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
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경우 : 가맹
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다.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
여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
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응
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
월

라. 법 제1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이 아
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마. 법 제10조제3항제2호를

제3조 ~ 제6조 (생략)

<신설>

위반하여 법 제10조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
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② 등록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재등록 제한 기간의 2
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
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
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등록 제한 기간을 줄일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 제7조 (현행 제3조부터
제6조까지와 같음)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가맹점 재등

<u>제7조</u> (생략)	<u>록 제한 기간에 대하여 2022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19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제9조</u> (현행 제7조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944